오가면행정복지센터 정기감사 결과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9. 2. 26(화) ~ 2. 28(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17. 3. 22. ~ 2019. 2. 25 / 2년간
○ 감 사 반 : 7명(감사팀 4, 차출감사관 3)
○ 감사중점사항
-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업무 전반
- 세출, 물품관리, 각종 공사 적법처리 여부
- 복지, 세무, 농·축산업, 산업분야 등 대민업무 추진사항 등

☐ 감사결과

일련번호	소 관	제 목	행정상 조치			
			계	시정	주의	기타
계		22건	22	15	7	
1	총무팀	도유재산(폐천부지) 부과관리 소홀	1	1		
2	총무팀	예정가격 작성 소홀	1		1	
3	총무팀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미매입	1	1		
4	총무팀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1	1		
5	총무팀	물품구입 대가지급 소홀	1		1	
6	총무팀	수당 지급 부적절	1	1		
7	총무팀	수입 인지·증지 미소화	1	1		
8	총무팀	일숙직근무 시간 미준수	1		1	
9	총무팀	강사료 소득세등 원천징수 미이행	1	1		
10	총무팀	공용차량 기록관리 소홀	1	1		
11	총무팀	전기요금등 연체료 집행 부적정	1	1		
12	총무팀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부적정	1	1		
13	맞춤형복지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소홀	1	1		
14	맞춤형복지팀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발급업무 소홀	1	1		
15	맞춤형복지팀	계속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사용료 부과관리 소홀	1		1	
16	맞춤형복지팀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차량의 영치등록(해제) 업무처리 소홀	1	1		
17	산업팀	2018년 농촌일손돕기 추진 업무 소홀	1		1	
18	산업팀	배 소포장 유통활성화 사업 시행계획 알림 업무 소홀	1	1		
19	산업팀	과수 개화기 꿀벌피해 예방홍보 협조 업무 소홀	1		1	
20	산업팀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 소홀	1		1	
21	산업팀	산불 진화장비 관리 대장 및 진화장비 점검 소홀	1	1		
22	산업팀	농지원부 정리 업무 소홀	1	1		

□ 주요지적사례

▣ 도유재산(폐천부지) 부과관리 소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오가면에서는 2017년도 도세분·군세분 도유재산대부료를 3월에 부과하였고, 2018년도, 2019년도 도세분·군세분 도유재산대부료 16건, 1,770,740원을 감사 당일까지 미부과하여 적기 세수확보에 차질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르면 결정 금액의 결정기준을 삼기 위해 규격 및 설계서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법의 특수성등 특별한 경우에만 견적가격 또는 거래가격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오가면에서는 '2018 오가 생활민원 행복경로당 담장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콘크리트 포장, 수로관 설치, 메쉬휀스 설치 등의 공정에 대하여 표준품셈에 따라 원가계산이 가능함에도 사업자의 견적가격으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

▣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미매입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에 따르면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은 1.5%, 건설공사·용역계약은 2.5%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되어있다.

○ 오가면에서는 '2017 주민생활편익사업 역탑1리 마을안길정비공사 관급 자재(레미콘)'등 3건에 11,753천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230천원 상당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부족하게 받은 사실이 있음.

▣ 환경보전비 사용실적 확인 소홀 및 대가지급 부적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 환경관리) 제3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제2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오가면에서는 "2017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역탑1리 배수로 정비공사"등 10건의 공사를 준공하면서 환경보전비 사용실적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환경보전비 686,000원을 정산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물품구입 대가지급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8조 및 동법 시행령 6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오가면에서는 '2018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양수기 구입' 사업에 대하여 청구 받은 후 55일 경과하여 대급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수당지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발령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다.

○ 오가면에서는 월중에 발령받은 오가면장에 대한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일할계산없이 전액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수입인지·증지 미소화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일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인 경우, 20,000원의 수입인지를 소화해야 하며, 「예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에 따라 계약예정가격이 일천만원이상인 경우 수입증지(10,000원)를 징수해야 하여야 한다

○ 오가면에서는 '분천1지구 배수로 정비'등 5건에 대하여 수입인지(100,000원) 및 수입증지(10,000원)를 미소화 한 사실이 있다.

▣ 일숙직자 퇴근시간 미준수

○ 「예산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및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에 따르면 재택근무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외 3시간을 근무 후 귀가 근무자로 숙직근무자는 18시부터 21시까지 대기 하여야 하여야 하고 일직근무자는 9시까지 출근하여 12시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 오가면에서는 총 5차례 일·숙직자가 규정된 일·숙직 근무시간을 미준수 하고 늦게 출근 한 사실이 있다.

▣ 강사료 소득세등 원천징수 미이행

○ 「소득세법」 제127조 및 동법 시행령 185조에 의해서 수입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규정함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 강사료를 지급할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고, 지방세법 103조 13조에 의해 주민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오가면에서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강사료에 대하여 소득세, 주민세등 공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공용차량 기록관리 소홀

○ 「예산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6조에 따르면 "기록 관리를 위하여 차량 운행일지, 유류수불대장, 차량정비대장 등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 한다"라고 되어 있다.

○ 오가면에서는 관용차량 2대를 운행하였음에도 2018년 8월부터 운행일지, 유류수불대장, 정비대장 작성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연체료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오가면에서는 전기료, 법인카드 연체료에 대하여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으나, 예산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부적정

○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변경계획(총무과-116014(2015.05.15.)에 따르면, 비상근무시에는 일반직 공무원은 명령시간 80시간(산불, 선거은 70시간)까지 근무 할 수 있으며, 비상근무시 평일은 4시간, 주말에는 8시간이내 지급할 수 있다.

○ 오가면에서는 하루에 480분 초과한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하여 총 61건의 706,411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다.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소홀

○ 『2018년 자활사업 안내(Ⅰ권)』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지침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신청 및 공급기간, 양곡 대금 및 납부방법, 납부계좌번호, 양곡의 부정유통(판매)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양곡구입 신청자로부터 대상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량 등 신청서 접수 및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오가면에서는 서면으로 신청받지 않고 전화 및 구두로 신청을 받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발급업무 소홀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②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제27조(장애인 사용자동차표지의 발급 등)에 의하면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확인하는 표지를 발급하게 되어있고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 오가면에서는 장애인사망과 이사등으로 차적이 변경되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무효처리대상자 6명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계속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사용료 부과관리 소홀

○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및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7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에 의하면 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에 의하면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연도 분은 허가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하는 때에, 이후 연도 분은 연도 시작 3개월 안에 부과·징수해야 한다.

○ 오가면에서는 2018년분 계속도로점용료은 5월 부과하였으며, 하천점용사용료는 11월에 부과한 사실이 있다.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차량의 영치등록(해제)업무처리 소홀

○ 『지방세법』 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자동차등록증의 영치증 교부)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하며, 영치한 경우에는 영치사실을 문서로 자동차등록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오가면에서는 자동차등록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음으로 인해 영치등록(해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2018년 농촌일손돕기 추진 업무 소홀

○ 농정유통과-4294(2018.10.8)호와 관련 「2018년 농촌일손돕기 추진계획 알림」 업무에 대하여 영농기를 맞아 농촌인력 감소와 고령화·부녀화에 따른 농촌의 인력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업무에 대하여 「농촌일손돕기 지원창구」 개설과 함께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농업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 오가면에서는 마을 이장 등 에게 공문서를 시행하시 않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소포장 유통활성화 사업 시행계획 알림 업무 소홀

○ 농정유통과-1(2019.1.2)호와 관련 「배 소포장 유통활성화 사업 시행계획 알림」 업무는 농식품부에서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배 소포장 유통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2019년 8월 1일부터 도매시장 유통금지 시행시기에 대비하여 과수 농업인들에게 알려야 함에도,

○ 오가면에서는 마을 이장 등 에게 공문서를 시행하지 않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과수 개화기 꿀벌피해 예방홍보 협조 업무 소홀

○ 예산군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단-1546(2017.4.17.)호와 관련 『과수 개화기 꿀벌피해 예방홍보 협조』로 과수농가에서 화분매개곤충으로 과실의 생산량과 품질향상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꿀벌에 살충제 살포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마을 앰프방송이 이루어지도록 알려야 함에도,

○ 오가면에서는 마을 이장 등에게 공문서를 시행하지 않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 소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및 산림축산과-3459(2019. 1. 28.)호로 시달한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우제류 등)』 명령 발령 알림 공문을 관내 우제류 등,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하여 이동중지 명령을 조치하여야 한다.

○ 오가면장은 사항을 우제류 등, 관련 종사자에게 일리지 않아 가축전염병 예방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 산불 예방 초등진화 태세 소홀

○ 산림축산과-6691(2015. 3. 9.)호, 산림축산과-9668(2016. 4. 11.)호, 산림축산과-34208(2017. 11. 30.)호 관련하여 산불진화용 장비를 배부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시달 하였고, 산불장비로 수령 후 자동분사형 등짐펌프 외 4종에 대하여 수령즉시 산불장비 관리 대장에 기록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산림축산과-12098(2018. 10. 24.)호로 시달한 산불방지 대책에 의거 산불예방 관리 업무 및 산불발생시 초등 진화 태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특히, 각종 장비도 산불발생시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 오가면에서는 자동분사형 등짐펌프의 배터리 충전을 않는 등 진화장비를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산불장비 관리대장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는 등 산불예방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농지원부 정리 소홀

○ 「농지법」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에 따르면 읍·면장은 농지소유 실태와 농지의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비하여야 한다.

○ 오가면에서는 농지원부 변동사항 96건에 대하여 정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